

서울특별시 문화 분야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82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5년 10월 30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·보호·육성하고 지역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조사·연구·교류활동, 공연예술활동, 디자인 문화 확산 등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 분야에서 세종문화회관 등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
- 나. 이에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문화 분야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1) 대상기관 : 세종문화회관, 서울문화재단, 서울시립교향악단,
서울디자인재단

2) 관련법령 및 조례

- 세종문화회관 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,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조례

- 서울문화재단 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,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- 서울시립교향악단 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,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·운영 조례
- 서울디자인재단 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,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

나. 출연의 필요성

대 상 기 관	출연의 필요성
세 종 문 화 회 관	-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 및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출연 필요
서 울 문 화 재 단	-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
시 립 교 향 악 단	- 교향악단 활동을 통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 진흥기여 등 각종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
서 울 디 자 인 재 단	- 디자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 문화 확산 및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

다. 주요 사업

대상 기관	주요 사업
세종문화회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-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-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·관리, 보급 및 조사·연구 -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등
서울문화재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문화예술의 창작·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-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- 국내·외 문화예술 교류 -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- 지역문화의·육성 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
시립교향악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연예술활동 수행 - 공연예술분야에 대한 조사·연구 - 공연예술단체와의 교류·협력
서울디자인재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디자인 진흥 사업 - 디자인의 국·내외 교류사업 - 패션·봉제산업 지원사업 등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16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문화정책과 문화관리팀 이영규 (☎ 2133-2527)